

미리 보는 2007년 개정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핵심 POINT (I)

-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분야

(재정경제부, 2007. 1.)

<목 차>

I. 법인세법 분야

- ① 역모기지보증기관의 보증보험료 수입 등을 수익사업에서 제외
- ② 금융지주회사의 차입금이자 상당액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허용
- ③ 대인보험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
- ④ 한국은행의 외화채권 양도시 원화평가손익 특례 인정
- ⑤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 인정범위 확대
- ⑥ 파생상품을 통한 특수관계자간 이익분여행위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추가
- ⑦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규정 보완
- ⑧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요건 보완
- ⑨ 자금대여시 시가로 보는 이자율 규정 보완
- ⑩ 연계기업이 비영리법인인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손비 인정

II. 법인세법·소득세법 공통 분야

- ①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② 경비 및 접대비 적격증빙 수취의무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 ③ 접대비로 취급되는 경비범위 조정
- ④ 뇌물의 손비부인 규정 명문화
- ⑤ 외국인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방법 보완

III. 소득세법 분야

- ① 대학교원 등의 연구활동비 비과세 제도 개선
- ② 주택자금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범위 확대
- ③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기준 하향조정
- ④ 약국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수입금액 범위 조정
- ⑤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복식부기의무 부여
- ⑥ 국세청장의 기타소득 지급조서내역 제공 범위·절차
- ⑦ 경매 등 환급금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의무 보완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 일정률(60%~100%)을 익금불산입 <input type="checkbox"/> 지주회사가 차입금이 있는 경우 차입금이 자 상당액은 익금불산입금액에서 차감	<input type="checkbox"/>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예외 인정 <input type="checkbox"/> 금융지주회사가 차입금을 자회사에 대여하고 조달금리 이상의 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익금불산입 허용

■ 개정이유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에 대한 대여 등 자금지원업무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고유업무로 수행

■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수입배당금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③ 대인보험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 (법인령 §57)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대물보험에 대해서는 <input type="checkbox"/> 대인보험에 대해서는 <input type="checkbox"/> 보험료 적립금, 기보고손해액, 미보고발생 손해액에 대해 책임준비금 계상 허용 <input type="checkbox"/> 대인보험에 대해서는 <input type="checkbox"/> 보험료 적립금, 기보고손해액에 대해서만 책임준비금 계상 허용	<input type="checkbox"/> 대인보험의 미보고발생손해액*(IBNR)도 책임준비금에 포함 (3년간 단계적 허용**) * IBNR(Incurred But Not Reported) : 보험사고는 발생했으나 아직 보험사에 보고되지 않은 사고에 대해 향후 지급될 보험금 추정액 ** 손금산입율 : 최초연도(30%)→다음연도(60%)→그 다음연도(100%)

■ 개정이유

기업회계의 일부로 취급되는 「보험업감독규정」 내용을 세무회계에서 수용

■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계상하는 분부터 적용

④ 한국은행의 외화채권 양도시 원화평가손익 특례 인정 (법인령 §68 제3호, §76 ③)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한국은행의 외화채권매매에 따른 원화평가손익에 대해서는 - 외화대금을 실제로 원화로 전환한 시점에서 과세

■ 개정이유

통화신용정책 및 외환정책을 수행하는 한국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례 인정

■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⑤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 인정범위 확대 (법인령 §73)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 ○ 원 칙 : 불인정 ○ 예 외 -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통화스왑은 평가손익 인정	○ 예외범위 확대 - 통화스왑 외에 환위험회피를 위한 여타의 통화 관련파생상품(선도, 선물, 옵션 등)도 평가손익 인정 다만, 금융기관의 경우 환위험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

■ 개정이유

환율변동에 따른 불합리한 세부담의 변동 방지

■ 적용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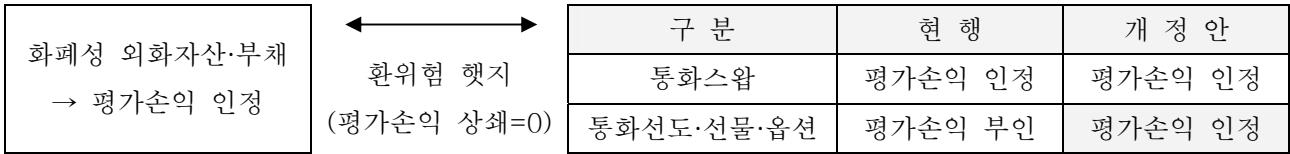
시행일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 참 고

-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 인정 범위 확대 개요

<기초자산>

<통화 관련 파생상품>



- 현재 모든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기말평가손익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초로 한 통화관련 파생상품 중 통화스왑의 기말평가손익만 과세소득에 반영하고 있으나, 시행령 개정 후에는 통화스왑을 포함한 모든 통화관련 파생상품(통화선도, 선물, 옵션 등)의 기말평가손익을 과세소득에 반영

※ 현재는 세무상 기초자산의 평가손익만 인정하고 통화스왑 이외의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업이 파생상품을 통해 환위험을 헷지하는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당기순이익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상 소득이 발생하여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

- 일반 기업의 경우 환위험 회피를 위한 통화관련 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기말평가손익을 인식하나, 파생상품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은행, 금감위 인가를 받은 증권사 등)에 한해서는 환위험 회피목적을 불문하고 파생상품 평가손익 인정

⑥ 파생상품을 통한 특수관계자간 이익분여행위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추가
(법인령 §88 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 「특수관계자간에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등 다양한 이익분여행위를 예시적으로 규정	<input type="checkbox"/> 대상 추가 - 특수관계자간 파생상품 거래시 권리를 불행사하거나 권리행사기간을 조정하는 이익분여행위

■ 개정이유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일반 손익거래인 특수관계자간 자산의 저가양도, 고가매입 및 저리의 자금대여 등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행사기간을 조정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분여를 한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특수관계자간 파생상품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

■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참 고

- 옵션거래에 있어서 권리 불행사에 의한 이익분여 사례

<사실관계>

2005. 12. 1. 甲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乙법인으로부터 A사 주식 100주를 2007. 12. 1. 주당 65,000원에 매도할 수 있는 put option을 60만원에 매입

구 분	2005. 12. 1.	2006. 12. 1.	2007. 12. 1.
주당단가	@65,000	@57,000	@57,000
put option 시간가치	600,000	350,000	0
put option 내재가치	0	800,000	800,000
put option 총가치	600,000	1,150,000	800,000

* 시간가치: 옵션행사기간이 길수록 시간가치 증가

* 내재가치: 행사가(2007년: 65,000원)와 실체가(2007년: 57,000원)의 차이

<세무처리>

2007. 12. 1. 甲법인이 put option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甲법인은 乙법인에게 옵션거래를 통하여 80만원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甲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80만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

⑦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규정 보완 (법인령 §88 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 <input type="checkbox"/> 합병, 증자, 감자 등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 유형을 예시적으로 규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자본거래 포괄 규정 신설 - 증·감자, 합병, 분할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한 이익의 분여

■ 개정이유

현행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으로도 부당하게 거래된 대부분의 손익거래 및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나, 재벌그룹의 계열사간 자본거래를 통한 편법적 이익분여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후적 입법보완으로는 한계가 있고, 부당행위 대상으로 법령에 열거된 거래유형에 준하는 거래에 한해 과세가 가능하다고 관시한 대법원 판례(대법 95누 5301, 1996. 5. 10. 외) 등을 감안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중 자본거래부분에 대해 상속·증여세법상 완전포괄주의 규정과 유사한 규정을 도입

■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⑧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요건 보완 (법인령 §88 ③)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요건 ○ 특수관계자간 거래 ○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대가로 거래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	○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 다만, 상장주식의 장내거래 경우는 제외

■ 개정이유

시가가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가와 시가의 차이가 경미한 범위 내에 있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배제

■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⑨ 자금대여시 시가로 보는 이자율 규정 보완 (법인령 §89 ③)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자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시 기준이 되는 이자율 ○ (원 칙)	○ (원 칙)

<p>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현재 9%)</p> <p>○ (예 외)</p> <p>①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p> <p>② 금융지주회사가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금액 범위 내에서</p> <p>- 자회사에게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상으로 대여한 경우 당해 이자율</p>	<p>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p> <p>*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법인의 자금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 제외)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이자율</p> <p>○ (예 외)</p> <p>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p> <p>* 예시 : 차입금 전액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경우</p>
---	--

■ 개정이유

실질과세원칙에 보다 부합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채택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인정

■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⑩ 연계기업이 비영리법인인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손비 인정
(법인규칙 §18 ②)

현 행	개 정 안
<p>□ 지정기부금(소득금액의 5% 범위 내 손비 인정)의 범위</p> <p>○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등</p>	<p>○ 「사회적기업 지원법」에 의한 연계기업이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에 한함)에 지출하는 기부금 추가</p>

■ 개정이유

비영리법인인 사회적 기업 활성화 지원

■ 적용시기

2007. 1. 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II. 법인세법 소득세법 공통 분야

①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법인령 §36·법인규칙 §18, 소득령 §80·소득규칙 §44의 2)

현 행	개 정 안
<p>□ 지정기부금 대상단체</p> <p>○ 지정요건 :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자체 등에 귀속</p> <p>○ 지정절차 : 주무관청 추천으로 재경부장관이 지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기부금단체의 기부금수지내역을 주무관청이 제출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세무서장에게 통지</p> <p>○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일정금액 이상 상속·증여세 추정 - 비공익적 활동 수행에 대한 주무관청의 확인

■ 개정이유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참 고

- 지정기부금 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방안

구 분	주 요 내 용
지정기부금단체의 기부금관리자료 수집 확대	○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의 기부금수지내역을 주무관청이 제출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하여 지정기부금 단체의 기부금 관리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
지원취지에 반하는 사유 발생시 지정 후 5년(유효기간) 경과 이전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신설	<p>○ 국세청에 의해 기부금의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상속·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 취소</p> <p>* 공익법인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상속·증여세 추징(상증법 §4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목적 외 사용 또는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자가 정당한 대가 없이 사용·수익하는 경우 <p>○ 주무관청에 의해 해당단체가 비공익적 활동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 취소</p> <p>*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민법 §3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이 ①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②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③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p>* 주무관청의 검사·조사권한(민법 §3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

② 경비 및 접대비 적격증빙 수취의무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법인령 §41, 소득령 §208의 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경비 및 접대비 적격증빙 수취의무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대상 ○ 5만원 초과 거래 * 적격증빙	<input type="checkbox"/> 제출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 1만원 초과 거래(2009년 이후) * 2007년(5만원 초과), 2008년(3만원 초과)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개정이유

적격증빙수취 기준금액 하향으로 세원투명성 제고

■ 적용시기

2009. 1. 1. 이후 지출분(다만, 2008년 지출분은 3만원)

③ 접대비로 취급되는 경비범위 조정 (법인령 §42 ④·⑤, 소득령 §55)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접대비의 범위</p> <p>○ 광고선전목적으로 제작된 견본품 등이라고 하더라도 특정고객에게 지출한 기증비용은 접대비로 취급</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특정고객에 지출한 비용도 1인당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취급하여 전액 손비 인정</p> <p>○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대하여 지급되는 판매장려금·판매수당 등 판매부대비용은 접대비로 취급되지 않음</p>

■ 개정이유

현재 접대비로 취급되는 경비 중 광고선전비·판매장려금 등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비 인정

■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④ 뇌물의 손비부인 규정 명문화 (법인령 §50, 소득령 §78)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손금불산입되는 업무무관 비용</p> <p>○ 비업무용 자산의 취득관리 등에 따른 비용 등</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형법상 뇌물(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포함)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이외의 자산</p>

	및 경제적 이익
--	----------

■ 개정이유

현재도 “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만을 기업의 손비로 인정하고 (법인세법 §19, 소득세법 §27), 기업이 업무와 관련 없이 적법하지 않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과세소득 계산시 손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대부분의 OECD 국가가 너물의 손비부인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너물이 손비인정 대상이 아님을 시행령에 명문화

■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⑤ 외국인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방법 보완 (법인령 §132 ⑧, 소득령 §179 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양도자 및 특수관계자가 <input type="checkbox"/> 직전 5년의 기간 중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 소유시 주식 양도소득 과세 <div style="text-align: center;"><신 설></div>	<input type="checkbox"/> 소유비율계산시 출자자단계가 아닌 조합 단계에서 판정

■ 개정이유

주식소유비율 계산은 내국법인을 법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조합단계에서 판단

■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Ⅲ. 소득세법 분야

① 대학교원 등의 연구활동비 비과세 제도 개선 (소득령 §38)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연구활동비 비과세 제도 <input type="checkbox"/> 정부·지자체 출연연구기관 연구원, 중소·	<input type="checkbox"/> 비과세한도 일원화

벤처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대학교원 - 비과세한도: 급여총액의 5% - 비과세 시한: 2006.12.31 ○ 정부·지자체출연연구기관 연구지원인력 및 초·중등 교원 - 비과세한도: 월 20만원 - 비과세 시한: 없음	- 비과세한도: 월 20만원 - 비과세 시한: 일몰 폐지 ○ (현행 유지)
---	---

■ 개정이유

교원 연구보조비 및 정부·지자체 연구기관의 연구지원인력 연구활동비 비과세제도와 형평 감안

■ 적용시기

2007.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주택자금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범위 확대 (소득령 §11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차입금 ○ 주택소유권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상환기간 15년 이상 - 상환기간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15년 이상인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에도 인정	○ 다음의 경우에도 인정 - 상환기간을 15년(종전기간 포함)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

■ 개정이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중 상환기간(15년 이상) 요건만을 충족하지 못해 소득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차입금에 대하여 신규대출방식이 아닌 기한연장을 통해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허용함으로써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지원

■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기존 차입금을 연장하여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③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기준 하향조정 (소득령 §143 ④)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추계과세 적용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기준 ○ 농어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 : 7,200만원 미만 ○ 제조, 음식·숙박업, 건설업 : 4,800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개인서비스업 : 3,600만원 미만 * 상기 기준금액 초과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매입, 인건비, 임차료)는 증빙에 의하고, 기타경비는 표준경비비율 적용	<input type="checkbox"/>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기준 하향조정 <u>2008년 이후 귀속</u> 6,000만원 미만 3,600만원 미만 2,400만원 미만 ※ 2008년 이후 귀속분(2009년 신고)부터 적용

■ 개정이유

증빙이 필요없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을 축소하여 근거과세 강화

■ 적용시기

2008.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④ 약국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수입금액 범위 조정 (소득령 §184)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건강보험공단이 약국에 요양급여(약제비) 지급시 3% 원천징수 ○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 - 의약품대금 + 조제료	- 조제료만 원천징수 (의약품대금은 제외) * 연말정산 간소화제도에 참여한 사업자에 한해 적용

■ 개정이유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약국에 요양급여 지급시에는 약제비(약품비+조제료)의 3%를 원천징수하고 있으나,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등으로 인해 약국의 수입여건이 바뀐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을 실제 이익이 발생하는 조제료 부분으로 한정
다만,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약국의 경우, 성실성이 담보되지 않음을 감안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

■ 적용시기

2007. 1. 1.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⑤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복식부기의무 부여 (소득령 §208 ⑤)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복식부기의무 대상자 ○ 계속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 농·어업, 도·소매업 : 3억원 이상 - 제조·음식·숙박업 : 1억 5천만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 7천 5백만원 이상 * 전문직사업자는 서비스업에 해당 ** 상기 기준 미만은 간편장부대상자 <input type="checkbox"/> 추계신고방법 ○ 3,600만원 이상: 기준경비율 ○ 3,600만원 미만: 단순경비율	<input type="checkbox"/>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 부여 ○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 간이과세 배제 대상 사업서비스업자 *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기술사업, 감정평가사업, 건축사업 등 -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input type="checkbox"/> 전문직 사업자 추계신고 ○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 개정이유

전문직 사업자는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높고 현재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간이과세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

■ 적용시기

2008.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복식부기의무 부여는 2007. 1. 1.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⑥ 국세청장의 기타소득 지급조서내역 제공 범위·절차 (소득령 §215 ⑦)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원고료, 강연료, 방송해설·심사 등에 따른 보수 <input type="checkbox"/>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활용토록 국세청 홈페이지(HTS)에 게재 - 상기자료에 따라 신고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 면제

■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⑦ 경매 등 환급금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의무 보완 (소득규칙 §97)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지급조서제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매·경 료·경정 등 환급금 <input type="checkbox"/> 구매액 10만원 이하이고 배당률 100배 이하	<input type="checkbox"/> 환급금액 500만원 미만 * 슬롯머신과 일치

■ 개정이유

경매 등의 특성을 감안

■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IV. 부가가치세법 분야

① 인터넷상 중개시장(오픈마켓)을 통한 통신판매업관련 납세절차 신설

(부가령 §4 ①, §7 ⑩, §8 ③, §79의 2 ② §84 ①)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input type="checkbox"/> 사업장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부가통신사업자(예: 옥션, G마켓 등)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 예외: 별도의 사업장을 둔 경우에는 그 사업장 <p><input type="checkbox"/> 사업자 등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연간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일괄등록신청 ○ 과세기간 종료일(6월말, 12월말) 이후 10일 이내에 일괄 등록 신청 <p>* 통신판매업자 기준 예시 (재경부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6개월)에 일정회수(예: 10회) 이상 판매하거나 일정금액(예: 600만원) 이상인 경우 <p><input type="checkbox"/> 세금계산서 교부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부가 통신 역무 제공시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

■ 개정이유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된 옥션, G마켓 등이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비밀보호를 근거로 통신판매업자의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어 통신판매업자의 미등록·과소신고로 인하여 세원관리상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오픈마켓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세원관리의 투명성을 제고

■ 적용시기

2007. 1.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참 고

- 부가통신사업자·통신판매업자 및 부가통신역무의 개념

구 분	주 요 내 용
부가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SKT 등 이통3사 및 KT, 하나로텔레콤 등 유선통신업체)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예) 옥션, G마켓, CJ몰, 이마트몰 등 쇼핑몰 사업자 * 기간통신역무 : 전화, 가입전신업무,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인터넷접속역무 등
통신판매업자	우편·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 신고한 자
부가통신역무	전송이라는 기본적인 통신서비스에 컴퓨터 기능을 결합하여 회선교환, 부호변환, 통신속도 변환, 정보의 축적, 매체변환, 계산처리 데이터베이스 제공 등 향상된 부가가치의 통신서비스

② 외국항행선박 등에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특례 (부가령 §26 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부가가치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적절한 세금계산서로 인정 <input type="checkbox"/>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 <신 설>	<input type="checkbox"/> 외국항행선박 등에 제공하는 재화·용역

■ 개정이유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항행선박 등에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대해 사업자가 선택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의 마찰을 해소

■ 적용시기

시행일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③ 한국투자공사 및 투자자문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령 §33 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금융·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은행업, 증권업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투자신탁업, 투자회사업, 자산운용업, 투자일임업 등 <신 설>	○ (현행과 동일) ○ 한국투자공사의 위탁자산 관리·운용용역 ○ 투자자문업

■ 개정이유

- 한국투자공사의 위탁자산 관리·운용용역은 면세되는 자산운용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다른 간접투자기구와의 조세중립성 차원에서 면세대상에 추가
- 면세되는 투자일임업과 과세형평성 유지 및 투자자문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자문업을 면세대상에 추가

■ 적용시기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투자자문업의 경우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참 고

• 면세대상 투자자문업의 범위

투자자에게 유가증권, 부동산, 실물자산 등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에 관하여 구술·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언을 하는 영업

투자판단	투자대상이 되는 투자자문자산의 종류·종목·수량 및 가격과 매매의 구분·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
투자자문회사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고 운용전문인력(Fund manager)을 2인 이상 확보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투자자문회사

④ 국가·지자체가 직영하는 직원 구내식당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령 §38 제3호)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중 과세대상 <input type="checkbox"/>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input type="checkbox"/> 국가·지자체가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면서 소속 직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

■ 개정이유

국가·지자체 소속 직원의 복지향상

■ 적용시기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⑤ 세금계산서 선발행 요건 완화 (부가령 §54 ②·③)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그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 * 일반적인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한 때 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input type="checkbox"/>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7일 이내」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 <input type="checkbox"/> 다만,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input type="checkbox"/> 공급하는 자가 7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지급받더라도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 i) 당사자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세금계산서교부시기(통상 대금청구시기라고 불림)와 대금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되고 대금청구시기와 대금지급시기간에 30일 이상 차이 나지 않을 것 ii) 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ERP시스템을 갖추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ERP에 보관

■ 개정이유

현재 선발생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교부와 동시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됨에 따라 거래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일자와 대금지급일자가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사업자의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를 추징하는 문제점이 발생함.

따라서, 상거래 관행상 세금계산서가 대금청구서로 갈음되고, 세금계산서 교부 후 일정기간 이후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고 7일내 대금지급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선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함.

■ 적용시기

2007. 1.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⑥ 국가 등의 부동산임대업 과세전환의 적용례 조정 (부가령 부칙 §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국가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의 과세 전환 적용례 <input type="radio"/> 2007.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input type="radio"/> 2007. 1. 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

2006. 2. 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이 2007. 1.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과세로 전환하도록 함에 따라 국가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국유재산법 제25조에 따라 임대료(대부료)를 선납한 경우, 2006. 12. 31.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선납한 임대료 중 2007. 1. 1.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주체(국가 등 또는 임차인)에 대한 분쟁, 임대료 추가징수에 따른 마찰 등이 예상되므로 2006. 12. 31. 이전에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그 적용시기를 조정함.

⑦ 음식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 (부가규칙 §19 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음식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3/103 <input type="radio"/> 다만, 2006.12.31까지 공제율: 5/105	<input type="radio"/> 2008.12.31까지 공제율 6/106 적용

* 음식업 이외의 업종: 2/102	
---------------------	--

■ 개정이유

음식업에 대한 세제지원

■ 적용시기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